

## 2025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3차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I.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 2025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현황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기초 (신규구축)	제주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구입 등 지원	2천만원	4개월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만 신청 가능

## II. 주요사항

### □ 2025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명) 2025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공고기간) 2025. 6. 17.(화) ~ 2025. 7. 4.(금) 18:00까지

(접수기간) 2025. 6. 17.(화) ~ 2025. 7. 4.(금) 18:00까지

(지원규모) 기초단계 3개사 내외(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제주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19년~'24년 중부 스마트공장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지원유형) 기초(신규구축에 한하며 동일수준 지원불가)

지원유형	구축수준	지원금(최대)	사업기간
기초 (신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li> <li>*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 RFID 적용)</li> </ul>	2천만원	4개월

\*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관리 등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신청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신청 시 반드시 사업명을 '2025년 제주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공고' 로 선택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서식은 <a href="https://www.smart-factory.kr/">https://www.smart-factory.kr/</a> 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기업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3년~'24년 / 12월 31일 기준 발급)
5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22년~'24년)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도입기업)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도입기업)

## □ 사업비 구성

지원유형	선정 기업수	지원 규모			
		지원금		기업부담금	
		금액(최대)	비율	금액	비율
기초 (신규구축)	3개사 내외	2천만원	50%	2천만원 이상	50% 이상

\* 중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지원금을 환수함**

## □ 지원제외 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홍·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19년 ~ '24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수혜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 시기는 **협약 후 전액 지급** 예정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기업부담금의 선입금 조건이며, 사업비 전용통장 필수

○ (**공급기업**) **최대 2개 과제까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짧은 사업기간(4개월)으로 인한 해당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한

\* 다수의 공급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함

○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도입/공급기업 신의성실 의무**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기타 별도 통보 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협약 해지되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기회 제한**[‘부정수급 주요사례’ 붙임 참조]

## □ 평가 및 검토항목

### ○ 요건검토 항목

검 토 항 목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조기업 여부 및 표준분류코드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재무제표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경제지표 확인

### ○ 기술성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①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②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③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④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b>합 계</b>		<b>100</b>

※ 동점자 처리기준 : 기술성평가 항목 중 ① → ② → ③ → ④ 점수 우선

○ 현장확인 점검 항목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점 검 항 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내 용	비 고
1. 사업 공고 ↓	▶ 제주TP 홈페이지 및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제주TP
2. 신청서 접수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수	도입기업
3. 요건검토 ↓	▶ 도입기업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 검토	제주TP
4. 기술성평가 (대면 발표평가) ↓	▶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	제주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5. 현장확인 ↓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제주TP 평가위원
6. 선정 및 결과통보 ↓	▶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준비	제주TP
7. 협약 및 사업착수 ↓	▶ 3자 협약 진행, 도입기업 자부담 입금 확인, 지원금 지급	제주TP, 도입·공급기업
8. 중간점검 ↓	▶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 계속 진행 여부 확인	제주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9. 감리 ↓	▶ 감리 수행	감리기관 도입·공급기업
10. 최종평가 ↓	▶ 시스템 구축 결과 확인	제주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11.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정산보고서 확인) 및 사업결과 통보	제주TP 도입·공급기업

### III. 문의 및 연락처

#### □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박현민 연구원, 064-720-3039, phm0963@jejutp.or.kr
	김수경 연구원, 064-720-3075, ksg@jejutp.or.kr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부정수급 주요 사례

### 1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전담합 후 사업수주

-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하여 자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조건으로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수주

\* 공급기업이 사전에 도입기업 자부담금을 도입기업의 계좌에 입금하면,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의 사업계좌로 재입금(일명 ‘백업’)

- ▶ 인천 소재 공급기업의 이사(사업수주 브로커)가 도입기업 A사 대표 통장으로 자부담금(5천만원)을 미리 입금 시켜 주고 공급기업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음.
- ▶ 경기 소재 도입기업 B사 직원 박00씨는 친분이 있는 공급기업 C사와 도입기업 대표 모르게 사전담합하여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허위로 사업 체결

### 2 스마트 공장 구축 불량

- 도입기업 실정에 맞지 않게 구축되거나 기계와 전혀 연동이 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사례

- ▶ 현실과 맞지 않게 구축되어 데이터 생성자료가 전혀 없고, 기계는 방치
- ▶ 도입기계와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고 도입기계는 창고에 방치
- ▶ 영세한 금속·도금 업종 도입기업 사업을 수주하여 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의무 미이행으로 도입기계 대부분 방치 확인

### 3 다수사업 중복수주 공급기업 기술인력 투입가능 일수 초과

- 다수 사업을 동시에 수주한 공급기업의 기술인력 투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투입가능 일수\* 초과 발생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투입일 수

- ▶ 공급기업A사가 구축하는 10여개 기업의 사업계획서상 투입인력 분석 결과 기술인력이 실제 투입가능 일수 초과 발생

**4****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수주**

- 공급기업 A사에 재직중인 김00씨가 공급기업 B사의 총괄 PM으로 사업수주 및 진행을 주도

- ▶ B사의 총괄PM(김00)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사항에 제조기업 C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프로젝트 수행 당시 A사의 개발팀 실장으로 재직 확인
- ▶ A사의 김00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기술자 미승인으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어 B사 대표(이00) 명의로 허위 청구

- 공급기업 K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PM을 제외한 기술인력을 타사 직원\*으로 구성하여 사업 시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타사 소속여부 확인

**5****기술인력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업수주**

- 공급기업 T사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이 없는 기술인력(3명)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업수주

- ▶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없는 T사는 수주한 사업에 대해 장비만 납품하고 실제 사업구축은 임시 고용한 타 회사 인력으로 사업 진행

**6****폐업으로 3년이상 사용·유지 의무 위반**

- 신규 공급업체 L사는 00년도 다수사업 수주하여 사업을 완료 후 곧바로 폐업하여 유지보수 미이행 등으로 사업 부실 초래

- ▶ 공급기업 L사는 과제종료 직후 폐업하여 A/S의무 회피, 부실시스템 구축을 유발하였으며 해당 기업은 차년도에 회사명, 법인을 변경하여 사업에 참여

- 도입기업 D사는 협약서에 따라 3년 이상 사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폐업할 경우 전담기관에 알리고 도입장비 등을 정산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